

18~19세기 중반 濟州地域 商品貨幣經濟 발전과 성격

이 옥*

1. 머리말
2. 정부 주도의 제주-육지간 물자 교역
3. 표류기록을 통해본 제주의 민간교역
4. 맺음말

요 약 문

18~19세기 제주의 상품화폐경제는 정부와 민간 두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8세기 정부 주도의 물자교역은 나리포창의 설치와 운영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나리포창은 관영상업이 갖는 한계로 인해 큰 실효를 보지 못하였다. 18세기말 이후 정부의 정책변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상품교역이 제주와 육지간 물자유통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4-AM0010).

**李旭 한국국학진흥원

이러한 변화는 제주상인의 육지와와의 교역 조건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18세기까지 제주 상인의 육지에서의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제한된 거래기간, 곡물 구입의 급박함 등의 조건 때문에 제주상인은 육지상인에 비해 불리한 교역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이 되면 제주 상인들은 이전 시기에 비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육지와와의 교역에 나서게 되었다. 그것은 제주 상인의 출륙에 대한 제한이 허술해지면서 거래기간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육지 상인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이른바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고, 또 이를 통해 육지에서 운반업이나 무곡상으로서의 영업이 가능해졌던 사정도 작용했다고 보인다.

주제어 : 상품유통, 나리포, 관영상업, 교역조건, 거래물종, 표류

1. 머리말

제주는 토질이 척박하여 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제주목과 정의, 대정현의 풍속조(風俗條)를 보면, 세 지역 모두 ‘땅이 척박하여 민이 가난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주(細註)에서는 ‘지질이 부조(浮燥)하여 밭을 개간하면 반드시 소나 말로 밟아주어야 하며, 2~3년간 계속 경작하면 이후에는 곡식이 여물지 않아 그 땅을 버리고 새로운 밭을 개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이고 있다.¹⁾ 때문에 공력에 비해 수확이 적어, 풍년이 들어도 곡식이 모자랄 것을 염려할 정도였고²⁾ 해초나 상수리로 부족한 곡물을 대체하는 상황이었다.³⁾ 게다가 제주의 기후는 비가 잦고 습해서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풍년보다는 흉년이 더 잦았다.⁴⁾

1) 『輿地圖書』 濟州牧 風俗條

2) 『備邊司謄錄』 72책, 숙종 45년 10월 7일

3) 『世宗實錄』 권64, 세종 16년 6월 갑자.

이와 같은 농업 부분의 취약성으로 인해 제주 지역은 대규모 흉년이 들면 자급자족이 어려웠다. 육지와외의 곡물 교역을 전제로 해야 원활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만 생산되거나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각종 산물이 있었다. 말이나 말총, 미역 등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물산은 상품화되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때문에 제주 지역은 일찍부터 육지와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주의 교역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주도 주민만이 아니었다. 조선정부에서는 제주도에 흉년이 들 때마다 육지의 곡식을 진휼곡으로 이송해주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제주로의 잦은 곡물 이송은 부담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주의 물산과 육지의 곡식 교역을 주관하고자 하였다. 수종 연간에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갈두산 창고나 1722년(경종 2)에 임피^{臨陂}로 이설되면서 제주 이송곡을 전담하게 된 나리포창^{羅里浦倉}이 그것이었다.

제주와 육지의 상품유통에 대한 기존 연구도 민간부문의 상품유통과 정부 주도의 물자유통 두 부문에 대해 이루어졌다. 전자에 대한 연구는 표류 관계 기록을 검토하여 제주지역 상품유통의 실체에 접근하였다.⁵⁾ 다만 이들 연구는 전국적 해상유통권의 성립에 초점이 있거나 표류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제주지역 민간상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다루었다. 후자에 대한 연구는 조선 정부의 진휼정책의 일환인 이속책^{移粟策}과 교제창의 하나로서 나리포창을 다룬 연구가 있다.⁶⁾ 진휼책의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제주와 육지간 상품유통의 구체적인 모습, 정부 주도하의 물자교역이 가진 한계 등이 잘 분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

4) 『千一錄』 賑政 附耽羅賑策.

5) 高東煥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1998; 李薰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高昌錫 『19세기 濟州人의 漂流實態』, 『19세기 濟州社會研究』, 일지사, 1997; 長森美信 『李朝後期の海上交易-全羅道地域を中心に』, 『千里山文學論集』 59, 1998.

6) 鄭亨芝 『조선후기 交濟倉의 설치와 운영』, 『梨大史苑』 28, 1995.

고자 한다. 우선 18세기 정부주도하의 물자유통인 나리포창에 대해서는 관영사업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그 실상과 의미를 밝혀 보겠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의 상품유통에서는 제주 상인들의 표류관련 기록을 통해 제주지역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상과 그 성격에 대해 분석하겠다. 여기에서는 주로 제주와 육지 사이의 거래 상품과 교역 조건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제주 지역 자체의 상품 생산 및 분배 방식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2. 정부 주도의 제주-육지간 물자 교류

1) 나리포창의 설립 배경

18세기 제주와 육지 사이의 상품 유통에서 조선 정부 역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 그것은 이 시기 제주 지역의 진흥과 관련이 있었으며, 조선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8세기 전반,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694년(숙종 20)을 고비로 조선 정부의 정책은 그 기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였다. 청나라와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북벌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면서, 군비 강화 정책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현종말년부터 자연재해와 흉년이 빈발하면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때문에 숙종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표준이 되는 조정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탕평책을 주도하였다.⁷⁾ 그 이후의 정치형세는 비록 희빈장씨(禧嬪張氏) 일족(一族)에 대한 노론측의 공세로 분쟁이 없지는 않았으나 탕평책으로 인해 전체적인 면에서 보합세의 형국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근거하여 그 동안 정쟁으로 소홀하였던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에 좀더 힘쓰기

7) 『肅宗實錄』卷32, 24년 정월 을미.

시작했다.⁸⁾ 그 방향은 수세 과정에서 자행되는 중간 부정을 제거함으로써 민생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중앙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양전^{田田}의 시행이나,⁹⁾ 상평통보 발행,¹⁰⁾ 후시^{後市}의 공인,¹¹⁾ 양역변통을 통한 민생 안정과 수세기반을 공고화하려는 정책¹²⁾ 등이 이때 시행된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이와 함께 먼 변방으로 관심 영역 밖에 있었던 제주를 통치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¹³⁾ 이는 특히 제주에 흉년이 들었을 경우에 잘 드러났다. 조선 정부는 곡물을 이송해 주지 않을 경우 제주민의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곡물을 마련, 획급해 주었다. 속중대 제주에 대한 배려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¹⁴⁾

물론 속중 연간부터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진휼곡을 운송해 준 데는 제주도의 비축곡이 바닥났던 사정도 작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임진왜란 이후부터 현종대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제주에 진휼곡을 보냈던 기록이 없다.¹⁵⁾ 제주 지역 비축곡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육지에서 진휼곡을 운송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¹⁶⁾ 심지어 전라도 연해지역에 흉년이 들자 제주의 비축곡을 운송하여 진휼에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⁷⁾ 그런데 1671, 1672년(현종 11, 12) 이른바 경신 대기근을 겪으면서 제주 비축곡은 바닥이 났고 이후 제주의 기민구제는 전적으로 육지에서 운송해주는 곡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¹⁸⁾

8) 鄭萬祚, 『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 『國史館論叢』 17, 1990.

9) 李哲成, 『18세기 田稅 比摠制의 實施와 그 性格』, 『韓國史研究』 81, 1993.

10) 宋贊植, 『朝鮮後期 行錢論』, 『韓國思想大系』 2,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6.

11) 李哲成, 『朝鮮後期 對淸貿易史 研究』, 國學資料院, 2000.

12) 鄭萬祚, 『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 『國史館論叢』 17, 1990.

13) 『備邊司謄錄』 78책, 영조 1년 11월 15일.

14) 鄭亨芝, 앞의 논문.

15) 임진왜란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제주에 곡물을 운송한 기록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16) 『備邊司謄錄』 21책, 현종 2년 11월 15일.

17) 『備邊司謄錄』 19책, 효종 8년 11월 15일.

18) 『備邊司謄錄』 31책, 속중 원년 2월 4일.

중앙 정부의 재정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 숙종대 말년에는 초년에 비해 재정 지출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¹⁹⁾ 때문에 숙종대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 대체로 현종대만 하더라도 흉년이 들었을 때 경외의 이문에 묵은 비축이 있어서 진휼청에서 사용했었다. 그러나 1682년(숙종 8)경에는 이미 각 아문의 비축분마저 고갈되어 서로 도울 수가 없으며 오직 용도를 절감하는 것만이 당시의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할 정도였다.²⁰⁾

국가 재정은 물론 진휼곡마저 바닥이 난 상태에서 제주도의 곡물 이송은 영호남 연해읍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703년(숙종 29) 제주에 큰 기근이 들어 8천석을 이송하는 일이 있었다.²¹⁾ 정부로서는 제주도와 영호남 백성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상품화폐경제를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제주의 생산물 중에서 상품가치가 큰 것들을 운송해 와서 육지의 곡식을 교역하는 방식이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1704년(숙종 30) 전라도 영암 갈두진에 제주 진휼을 위한 전담 곡식 창고를 만드는 것이었다. 마침 그해 영암 일대에 소나무 해충이 번져 선재용으로 기르던 소나무가 쓸모없게 되었다. 이에 그 소나무를 연료로 활용하여 소금을 굽고, 이를 재원으로 진휼곡을 확보하였다.²²⁾ 그리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에 제주에 보냈던 곡식에 대한 대금을 활용하였다. 즉 전년도 이전곡을 분급받은 제주민에게 곡식 대신 생선이나 미역으로 거두어 갈두산으로 운반해 와서, 거기에서 곡물과 바꾸어 비치해 두었다가 다음 흉년에 대비케 하는 것이었다.²³⁾ 그런데 1713년(숙종 39) 이후 제주도에 흉년이 계속되어 막대한 양의 곡식을 제주도에 획급하여 비축곡이 줄어들면서 갈두산창은 명맥만 유지한 채 제대로 기능하지 못

19) 『日省錄』 정조 원년 7월 18일.

20) 『備邊司謄錄』 36책, 숙종 8년 11월 27일.

21) 『肅宗實錄』 卷38, 숙종 29년 12월 병술.

22) 『備邊司謄錄』 55책, 숙종 30년 5월 30일.

23) 『備邊司謄錄』 56책, 숙종 31년 2월 13일.

하였다.²⁴⁾

이에 조선 정부는 곡식 대신 화폐를 활용하는 방식을 구상하였다. 이 역시 상품화폐경제를 진흥에 활용하는 방식의 하나였다. 1719년(숙종 45) 민진원은 제주도에서 4, 5만냥 정도의 화폐를 주전하여 비치해 두었다가 흉년에 제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면, 그들이 그 돈으로 현지나 육지의 곡물을 구입하는 방식을 건의하였다.²⁵⁾ 그러나 제주에서 주전을 하게 되면 폐단이 많을 것이라는 대신들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²⁶⁾

1725년(영조 1)에는 제주에 직접 곡식을 보내는 대신 화폐를 주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즉 호남 연해읍에 곡식 대신 화폐를 비치하였다가, 제주에 흉년이 들면 제주에서 직접 배를 보내게 하여 돈을 지급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주에서 알아서 곡식을 무역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주전 계획 자체가 취소되면서 실행되지 못하였다.²⁷⁾

이처럼 조선 정부는 제주의 산물과 육지의 곡식을 교역하거나 주전을 통해 제주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의 여건상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영호남 연해읍과 제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이 가능할 만큼 제주와 육지 사이의 상품유통은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조와 정조 연간에는 나리포창이라는 제주 진흥 전담 창고를 두고, 제주도와 육지간의 상품경제를 활용하여 진흥곡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리포창의 운영은 18세기 조선정부가 주도했던 제주와 육지간 물자유통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하에서는 나리포창 운영의 변화과정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다.²⁸⁾

24) 鄭亨芝, 앞의 논문.

25) 『備邊司謄錄』 72책, 숙종 45년 6월 8일.

26) 『肅宗實錄』 권64, 숙종 45년 10월 병진.

27) 『備邊司謄錄』 78책, 영조 1년 11월 15일.

28) 나리포창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과 변화과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매우 정치하게 밝히고 있다(鄭亨芝, 앞의 논문).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환곡과 진흥 정책이라는

2) 나리포창의 운영과 한계

나리포창은 원래 금강 상류와 하류 지역 사이에 상인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금강 상류지역의 어염수요자가 직접 금강 하류까지 와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고갈상태인 진흙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즉 공주와 연기 접경지역인 나리촌에 별장을 설치하고, 배를 만들어 금강을 오가며 어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진흙곡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1720년(숙종 46)에 만들었다.²⁹⁾

이러한 나리포창이 제주 진흙을 위한 전담 창고로 성격이 바뀐 것은 1722년(경종 2)이었고,³⁰⁾ 그 위치도 임피로 옮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운영방식도 초창기와는 달라졌을 것이지만, 이쉽게도 임피로 이설한 후의 시행절목이 남아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이전에는 연안 지역에서 생산된 어염과 호조 세염^{稅鹽}을 판매하여 진흙곡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으나, 임피로 이설한 이후에는 제주에서 생산된 상품이 교역 대상이 되었다. 즉 제주에 보낸 진흙곡의 댓가로 양태와 미역, 말총 감투, 전복 등의 상품을 보내오면, 그 판매대금으로 다시 곡식을 확보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에서 보낸 상품을 판매한 대금은 이전에 보냈던 진흙곡을 보전하고, 나리포창의 각종 운영경비도 그 안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나리포창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상당한 이윤이 창출되어 제주의 진흙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분의 곡식도 비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³¹⁾

그러나 실제 운영을 보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제주와 연해읍의 백성에게 부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물자유통, 일종의 관영사업이 갖는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겠다.

29) 『羅里浦事實』 羅里浦新設節目, 康熙 庚子(숙종 46, 1720).

30) 『備邊司謄錄』 88책, 영조 6년 12월 3일.

31) 『備邊司謄錄』 145책, 영조 40년 5월 2일, 『羅里浦改節目』.

담만 가증시켰을 뿐이었고, 이 때문에 1720년 나리포창 개설부터 1787년(정조 11) 나주로 이설할 때까지 모두 12차례나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³²⁾ 이처럼 나리포창의 운영이 지지부진한 그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관영상업이 갖는 한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정부에서 관영상업을 운영하는 명분으로서 제주에 대한 진흥곡 확보를 내세웠던 것 역시 부실운영을 초래한 근본 원인 중 하나였다.

우선 후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리포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제주에서 진흥곡에 대한 댓가인 제주 물산을 제때에 보내야 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곡물을 보낸 이듬해에 반드시 그 댓가인 제주 물산을 보내도록 하고, 기간내에 보내지 않으면 제주목사를 문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³³⁾ 그러나 제주 목사는 번번이 미역의 생산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산물의 출송을 미루어 미수대금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였다. 일례로 1770년에 제주이전곡의 미수대금이 19,000여석이던 것이,³⁴⁾ 이듬해인 1771년에는 23,500여석으로 늘어났다.³⁵⁾ 게다가 이전곡의 댓가를 갚지 않고 제주환곡으로 남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⁶⁾ 이처럼 제주 이전곡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제주에서는 거의 매년 진흥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전곡을 요청하는 것은 관례화되어 갔다.³⁷⁾

제주이전곡은 진흥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생산의 부진, 환곡으로의 활용 등을 명분으로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또 정부에서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제주에서 제대로 댓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리포창의 운영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32) 나리포창 운영규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鄭亨芝 앞의 논문, 201~211쪽 참조.

33) 『羅里浦事實』改節目, 乾隆 戊寅(영조 34, 1758).

34) 『備邊司謄錄』155책, 영조 46년 5월 22일.

35) 『羅里浦事實』追節目, 乾隆 辛卯(영조 47, 1771).

36) 『備邊司謄錄』81책, 영조 3년 6월 11일; 『備邊司謄錄』145책, 영조 40년 6월 14일.

37) 『備邊司謄錄』131책, 영조 32년 7월 27일.

다음은 관영상업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원래 관영상업은 농민에 대한 인신적 지배를 질서 체제의 근간으로 하는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관영상업을 운영하게 되면, 그것은 관영상업의 형식을 취했을 뿐 농민에 대한 직접적 수탈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관영상업은 시행과 동시에 내용상으로는 전제권력의 농민에 대한 직접적 수탈의 범위를 기술적으로 확대하는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³⁸⁾

나리포창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점은 크게 제주의 상품을 발매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민에게 전가되는 측면과 제주에서 이전곡을 분급하고 그 댓가로 제주 물산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우선 제주물산을 발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나리포창을 처음 설치했을 때는 제주 물산을 직접 상인에게 발매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피로 이설하기 전에 상인들이 폭주할 경우 장시를 개설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나,³⁹⁾ 임피현감에게 나리포의 운영을 전담하게 하면서 기존의 폐단 중 하나로 '감색배가 뇌물의 다과만 보고 사람됨을 보지 않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나 한 곳에 상품을 쌓아두고 상인이 오기만 기다리다보니, 여러 해가 지나도록 팔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때문에 임피 등 10읍을 속읍으로 정해 의무적으로 제주의 물산을 가져다가 발매하게 하고, 아울러 제주물산을 가져가고 3달 이내에 발매한 대금을 나리포에 납부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가,⁴¹⁾ 다시 속읍을 20읍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상인이나 잡인에게 절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²⁾

게다가 정부에서는 시장논리에 따라 제주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38) 影山剛, 『中國古代の商工業と專賣制』, 東京大出版部, 1984.

39) 『羅里浦事實』 羅里浦新設節目, 康熙 庚子(숙종 46, 1720).

40) 『羅里浦事實』 以僉使有弊屬於臨坡事節目, 乾隆己巳(영조 25, 1749).

41) 위와 같음.

42) 『羅里浦事實』 改節目, 乾隆戊寅(영조 34, 1758).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시장가격에 따라 조절하지 않고 고정하였다. 처음에는 양태 1립에 백미 1두 2승 5홉(錢으로는 2전 5푼), 미역 1속은 2전(米로는 1두), 세양태 1립은 3전으로 계산하여 받아들였다.⁴³⁾ 특히 양태가 문제였다. 미역은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수량이 많고 어느 정도 비싸도 쉽게 팔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양태는 대량으로 교역하기에는 수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⁴⁴⁾ 게다가 당시 제주 사상私商들의 양태 1립 판매가는 8푼이었는데 반해, 책정한 양태가는 3배가 넘는 2전 5푼이었다. 그래서 1749년(영조 25) 가격을 조정하면서, 미역이나 거래 실적이 별로 없는 물품은 그대로 두고 양태의 가격만 1립에 백미 1두(2전)으로 낮추었다.⁴⁵⁾ 그리고 양태의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망건, 마미馬尾, 어물, 표고 등으로 채워 보내게 하였다.⁴⁶⁾ 그런데 양태는 여전히 가격이 높아 낙본落本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다시 제주 사상 판매가의 2배인 1전 6푼(米로는 8승)으로 값을 내려 교역하게 하였다.⁴⁷⁾ 다시 말해 나중에 낮춘 가격 역시 시가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고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보내는 산물의 질은 갈수록 나빠져, 사상이 판매하는 물건보다 질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양이 너무 많아 판매하기도 쉽지 않았다. 때문에 결국 일반민에게 억지로 외상분급하는 실정이었다. 물론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주 물산을 각 읍과 나리포에서 절반씩 분급하고, 민간에는 분급하지 말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다.⁴⁸⁾ 그러나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관영상업을 경영함으로써 그 이윤으로 제주진휼곡을 확보하려 했던 원래의 의도와 달리, 그것은 다시 나리포와 그 주변의 거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형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43) 『羅里浦事實』以僉使有弊屬於臨陂事節目, 乾隆 己巳(영조 25, 1749).

44) 『備邊司謄錄』145책, 영조 40년 5월 2일 『羅里浦改節目』.

45) 『羅里浦事實』以僉使有弊屬於臨陂事節目, 乾隆 己巳(영조 25, 1749).

46) 『備邊司謄錄』144책, 영조 39년 8월 8일 『羅里浦改節目』.

47) 『備邊司謄錄』145책, 영조 40년 5월 2일 『羅里浦改節目』.

48) 『羅里浦事實』改節目, 乾隆己丑(영조 45, 1769).

다음은 제주에서 이전곡이 분급되고 그 대가로 제주 물산을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폐단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주는 관속官屬이 되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⁴⁹⁾ 제주목만 해도 아전과 통인만 1,000명을 헤아릴 정도로 많은 수가 있었다.⁵⁰⁾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만의 계를 조직해서 제주 지역의 향리 직임을 독점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다.⁵¹⁾ 이들은 제주 이전곡에 대해서도 잦은 부정을 저질러, 중앙정부에서도 제주에 어사를 파견할 때마다 그 『재거절목』에서 '제주 이전곡은 모두 토호와 관속배들이 차지하고 제주 물산을 징수할 때는 포민浦民에게 양태, 산맹山氓에게 어곽魚窟을 징수하는 등'의 폐단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하고 있었다.⁵²⁾

실제 이들의 부정은 제주 이전곡을 운송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제주 이전곡은 전라도 선박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제주 선박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때 전라도 선박은 별탈없이 곡식을 운송하였는데, 제주 선박은 영운감관領運監官과 선인船人들이 결탁하여 연해의 여러 항구를 다니면서 곡식을 팔아넘긴 다음 고의로 난파시키는 경우가 많았다.⁵³⁾

뿐만 아니라 제주민에게 미곡을 분급할 때도 품질 높은 미곡을 받고서도 썩거나 묵은 쌀로 바꾸어 분급하여, 1두를 분급받아도 실제로는 4, 5승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⁵⁴⁾ 게다가 양태1립立의 가격 환산이 미 1두 2승 5홉에서 8승으로 낮아진데다가, 차츰 미곡보다 잡곡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전곡에 대한 제주민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그들은 규정된 양태 등의 수효와 질을 책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⁵⁵⁾ 제주 물산을 운송할 때 고의로 사고를 내기도

49) 『南征記』, 『尙植傳』.

50) 『備邊司謄錄』 72책, 숙종 45년 11월 2일.

51) 『備邊司謄錄』 204책, 純祖 14년 5월 28일.

52) 『備邊司謄錄』 103책, 영조 14년 6월 12일.

53) 『承政院日記』 1136책, 영조 32년 윤9월 29일.

54) 『書啓輯錄』, 『濟州巡撫御史朴天衡書啓』(1781년, 정조 5년).

55) 『備邊司謄錄』 167책, 정조 8년 11월 30일.

하였다.⁵⁶⁾ 뿐만 아니라 양태의 정부 책정 가격이 사상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비싸더라도,⁵⁷⁾ 이전곡의 댓가로 납부하기보다 사상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⁵⁸⁾

이처럼 제주에서도 현지의 관속배와 토호들이 나리포 이전곡을 백성들을 수탈하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나리포창은 사실상 허설화되어 갔다. 그리고 영조 46년 경인정식(庚寅定式) 후 나리포창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제주에서는 칠산바다를 건너지 않고 잡물을 납부할 곳으로 나리포창을 이전해주기를 원하였다.⁵⁹⁾ 이에 1787년(정조 11) 나주로 나리포창을 옮기고 제주 잡물의 납입처는 나주 제민창으로 옮겨 제주 토산물을 나주 부근 19읍에 나누어주고 판매케 하였다.⁶⁰⁾

이런 상황이 되자 점차 정부의 제주 진흥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조 연간에는 민간상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리포 이전곡이 제주 진흥을 위해 부득이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⁶¹⁾

그러나 정조 연간에 들어서면서 점차 민간의 물자교역을 활용하여 제주의 흥년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제주 진흥곡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던 전라감사뿐만 아니라, 제주목사들도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부사직 심낙수는 삼남 연해읍의 상선으로 제주에 무곡상으로 가는 자에게 해당 읍에서 부세를 줄여주는 혜택을 준다면, 이전곡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⁶²⁾ 전라감사 이서구는 삼남 연해읍에서 제주도 상선의 통행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무곡활동을 통해 제주의 진흥에 보태자는

56) 『備邊司謄錄』 151책, 영조 47년 7월 26일.

57) 『備邊司謄錄』 152책, 영조 44년 9월 5일.

58) 『備邊司謄錄』 150책, 영조 47년 6월 5일.

59) 『正祖實錄』 권22, 정조 10년 10월 을사.

60) 『備邊司謄錄』 170책, 정조 11년 정월 4일.

61) 『承政院日記』 1212책, 영조 38년 11월 7일.

62) 『備邊司謄錄』 182책, 정조 18년 11월 23일.

의견을 제시하였다.⁶³⁾ 또 전라감사 서정수는 암말의 육지 교역을 허용함으로써 흉년에 대비하지는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⁶⁴⁾ 다시 말해 제주의 원활한 곡물 유통을 위해 민간차원의 상품유통을 적극 활용하지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제주도 풍년이 들면 곡식에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⁶⁵⁾ 차라리 제주에 곡식을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⁶⁶⁾ 그리하여 육지에서 이전하는 번거로움과 전라 연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에 만석의 곡식을 비축하기로 하였다.⁶⁷⁾ 다시 말해 18세기말이 되면 관에서 주도하는 제주와 육지간의 물자유통을 통해 제주의 진흥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조를 버리고, 그 역할을 민간차원의 교역으로 넘기는 형태로 정책이 바뀌게 되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18세기 이후 제주 산물이 지닌 상품 가치에 주목한 정부가 제주 진흥곡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시행했던 나리포창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것은 정부가 착안했던 관영상업의 형태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이 결여된 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였기 때문이었다.⁶⁸⁾ 아울러 당시 제주와 육지의 민간교역이 활성화된 상황에서,⁶⁹⁾ 현지의 토착세력과 관리들이 결탁하여 나리포창의 운영을 하나의 이권으로 삼은 데도 하나의 원인이 있었다. 그들은 양 교역 부분의 가격 차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이윤을 획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부주도의 교역을 형해화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19세기에는 제주와 물자유통은 민간차원의 물자유통이 그 중심축을 차지하게 되었다.

63) 『備邊司謄錄』 182책, 정조 18년 12월 8일.

64) 『備邊司謄錄』 184책, 정조 20년 정월 3일.

65) 『備邊司謄錄』 188책, 정조 22년 7월 20일.

66) 『正祖實錄』 권49, 정조 22년 7월 임오.

67) 『備邊司謄錄』 189책, 정조 23년 4월 29일.

68) 鄭亨芝, 앞의 논문.

69) 『備邊司謄錄』 184책, 정조 20년 정월 3일. “春開水暖 結涼採藿商舶輻輳”

3. 표류기록을 통해본 제주의 민간교역

1) 제주 내부의 상품유통

18~19세기 제주도민의 교역 현황은 각종 표류 관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가 표류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 분석을 통해 18~19세기 중반 제주도의 민간교역의 실상과 그 성격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제주도 사람들은 외국으로 표류할 경우 자신들의 출신지를 제주도라 하지 않고 전라도의 나주나 강진, 영암 등지로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⁷⁰⁾ 그것은 광해군 때 유구의 왕자가 제주도에 표류했는데 제주목사가 그들을 살해하고 물품을 강탈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 등지에서 제주도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살해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었다.⁷¹⁾ 따라서 표류 관련 기사에서도 제주도 상인들의 교역활동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당시 제주도의 민간교역 실태를 살피는 데는 표류 관계기사만큼 자세한 것도 없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18~19세기 중반 제주의 상품화폐경제의 실상과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18세기 표류기록은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의 자료를 중심으로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과 『동문회고(同文彙考)』 등에 나오는 제주도 상인의 표류 기사를 활용하였고, 19세기는 『탐라록(耽羅錄)』, 『제주계록(濟州啓錄)』, 『탐영관보록(耽營關報錄)』의 자료에 나오는 기사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작성된 것이 <부표>이다.

우선 제주지역 내부의 상품유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주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19세기 중반까지도 도내에 장시가 개설되지 않았다. 18세기 말에 간행된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⁷²⁾, 1840년대에 저술된 이원조의

70) 高東煥 앞의 책.

71) 高昌錫 앞의 논문, 1997.

72) 『濟州大靜旌義邑誌』 場市條

『탐라지(耽羅誌)』 초본(草本)에 모두 장시가 없다고 나오고 있다. 특히 『탐라지』 초본에는 화폐 대신 포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거래가 매우 어렵다고 기록하고 있다.⁷³⁾

이렇게 19세기 중반까지도 장시가 개설되지 않고 화폐도 사용되지 않았던 제주 내부의 물자 교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제주의 상업은 도내의 산물과 육지의 곡물을 교역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조선전기부터 제주에는 모자라는 양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에 주력하는 이들이 많았다.⁷⁴⁾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도내 교역이 아닌 육지와와의 교역에 중점이 있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래품목이 곡물이었고, 그것이 주로 육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주의 특성상 주요한 거래는 장시가 아닌, 외부물자가 유입되는 통로인 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부표>의 표류기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부표 32)의 표류인 중 황종희와 임도홍은 이와 관련해 흥미있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⁷⁵⁾ 두 사람은 모두 창원과 서울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 제주에서 행상을 하다가 표류하였다. 전자는 정의에서 백목을 가지고 소금을 구입하였고, 후자 역시 정의에서 소금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정의에서 제주목으로 소금을 판매하려고 가던 중에 표류하고 있다. 또 37)의 김순창 등은 나리포의 이전곡 운송에 참여하여 받은 선가미로, 별방진으로 미역을 구입하러 가던 길에 표류하고 있다.⁷⁶⁾ 61)⁷⁷⁾과 62)⁷⁸⁾의 기록 역시 위미포와 두모포에서 미역을 무역하다가 표류하고 있다.

73) 『耽羅誌』草本, 卷1, 土俗. “邑無場市(貨不用錢 只用布木 賣買極艱).”

74) 『世宗實錄』卷5, 세종 원년 9월 戊申.

75) 『漂人領來謄錄』18책, 壬戌(1742, 영조 18) 2월 2일.

76) 『備邊司謄錄』148책, 영조 41년 9월 4일.

77) 『濟州啓錄』咸豐 2년(1852, 철종 3) 12월 19일.

78) 『濟州啓錄』咸豐 2년(1852, 철종 3) 12월 24일.

앞의 표류 기록들은 제주의 포구와 포구를 무대로, 제주 및 외지의 상인들이 행상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바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포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다음의 사례들은 이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된다. 부표 55)⁷⁹⁾와 60)⁸⁰⁾은 세화포에서 초석을 구입하고 조천포로 돌아오던 길에 표류한 기록들이다. 45)의 김응보는 대정현 하원포에서 소나무를 싣고 화북포로 곡식을 교역 하러 가던 길에 표류하고 있다.⁸¹⁾ 74)는 건입포에서 땀감을 팔고 돌아오던 길에,⁸²⁾ 79)는 서귀포에서 약재를 사기 위해 무명과 걸보리 등을 싣고 가다 표류하고 있다.⁸³⁾

또 <부표> 27)의 조담사리는 옹기장으로, 1732년(영조 8) 흉년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자 제주에서 작업해 연명하려고 강진에서 제주로 가던 길에 표류했다.⁸⁴⁾ 물론 조담사리의 선택은 흉년이고 궁여지책으로 제주에서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의 옹기 유통이 상당히 활발했고, 따라서 제주에 가면 옹기장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결단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75)⁸⁵⁾와 76)⁸⁶⁾의 표류기록은 서귀포, 모슬포, 대정현 금물포 등의 포구에서 옹기가 판매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62)의 기록은 대정현 금물포에서 사기가 거래되고 있었음도 보여주고 있다.⁸⁷⁾

79) 『濟州啓錄』 道光 30년(1850, 철종 1) 5월 10일.

80) 『濟州啓錄』 咸豐 원년(1851, 철종 2) 4월 10일.

81) 『耽羅啓錄』 道光 22년(1842, 헌종 8) 10월 8일.

82) 『濟州啓錄』 咸豐 6년(1856, 철종 7) 9월 15일.

83) 『濟州啓錄』 咸豐 8년(1858, 철종 9) 4월 7일.

84) 『漂人領來啓錄』 16책, 癸丑(1733, 영조 9) 9월 1일.

85) 『濟州啓錄』 咸豐 7년(1857, 철종 8) 4월 25일.

86) 『濟州啓錄』 咸豐 8년(1858, 철종 9) 2월 16일.

87) 『濟州啓錄』 咸豐 2년(1852, 철종 3) 12월 24일.

앞의 사례들에 나오는 소나무나 뽕감, 약재, 옹기, 사기 등은 대체로 산간지대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을 판매 혹은 구입하기 위해 모두 포구로 나와서, 배를 타고 다른 포구로 가고 있음을 이 기록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제주지역 내부의 물자 교역은 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제주 지역의 포구들은 육지에서 반입되는 상품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제주의 산간지대와 해안지대 상호간의 물자교환도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는 별도의 장시를 개설하는 것보다, 포구에서 교역하는 것이 제주 내부의 수요자, 판매자뿐 아니라 외지의 상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제주와 육지간 상품유통의 발전과 변화

이번 절에서는 표류기록에서 나타나는 제주와 육지간 상품유통의 특징과 그 발전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부표>의 표류기록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으로 진상품 상납이라고 하는 공무公務와 공사교역公私交易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진상과 교역이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제주만의 특징이었다.⁸⁸⁾ <부표> 6)은 진상과 함께 군량 무역, 즉 공무역을 행하던 중 표류한 경우였다.⁸⁹⁾ 8)의 허태준 등은 감자薯子 진상과 함께 진흥곡을 무역하기 위해 양태, 모자, 감곽, 전복, 말안장 등을 가지고 제주에서 출항하였다.⁹⁰⁾ 또 10)의 안세량 등은 당유자진상 및 제물을 운송하는 것과 함께 고마소 및 예방소의 공사公私 잡물을 교역하기 위해, 감곽 57,000속束, 군목軍木 28필, 전복

88) 長森美信, 앞의 논문, 147쪽.

89) 『漂人領來譜錄』 3책, 己卯(1699, 숙종 25) 6월 3일.

90) 『漂人領來譜錄』 7책, 庚辰(1700, 숙종 26) 7월 21일.

35첩貼, 나무빗 130죽竹, 모자 20죽, 녹비 30령黍, 양태 29죽을 본전으로 지참하고 있었다.⁹¹⁾ 이외에 13)의 고세환은 강진에서 추복 등 진상품을 상납한 뒤에 만경에 가서 감곽 3,000속으로 조租 75석을 교역하였고,⁹²⁾ 14)의 김이운 등은 월령유자를 해남 도회관에 진상하고 나서, 부안 사진포로 가서 신고 갔던 말과 감곽으로 정조正租 300석을 교역하고 있다.⁹³⁾ 39)의 고만재 등은 추인복진상 상납 후에 은진에 가서 감곽을 판매하고, 거기서 얻은 판매대금을 가지고 전라 우수영으로 와서 포목으로 교환하고 있다.⁹⁴⁾ 이외에도 진상품 상납과 함께 교역을 행하는 경우는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진상선에 사상이 함께 동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주 출신의 상인이나 외지의 상인들이 교역을 마치고, 진상선에 동승하는 것이었다. 21)의 경우는 진상선에 제주의 무곡상인과 나주에 사는 사상, 또 추노차 제주에 왔다고 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동승하고 있었다.⁹⁵⁾ 22)의 경우도 진상과 함께 군기에 필요한 잡물을 교역하는 공무역 선에 서울과 임피, 영암에 거주하는 사상들이 동승하였다.⁹⁶⁾ 35)의 경우는 개성과 서울의 상인들이 입양태笠涼臺를 무역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주의 양태 행상과 함께 제주의 진상선에 동승하고 있다.⁹⁷⁾

이러한 특징은 제주의 특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제주와 육지 사이의 교역에 참여하려면 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외지인이 제주로 들어오거나⁹⁸⁾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 상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공문을 받은 다음에야

91) 『漂人領來謄錄』 9책, 甲申(1704, 숙종 30) 7월 3일.

92) 『漂人領來謄錄』 9책, 戊子(1708, 숙종 34) 윤3월 22일.

93) 『漂人領來謄錄』 9책, 戊子(1708, 숙종 34) 4월 7일.

94) 『備邊司謄錄』 159책, 정조 2년 5월 23일.

95) 『漂人領來謄錄』 13책, 癸卯(1723, 경종 3) 10월 11일.

96) 『漂人領來謄錄』 14책, 甲辰(1724, 경종 4) 4월 19일.

97) 『備邊司謄錄』 135책, 영조 34년 9월 21일.

98) 『耽羅誌』 草本, 권3, 舊例.

가능했다.⁹⁹⁾ 게다가 당시의 항해기술로는 제주와 육지 사이의 해로가 매우 험준하여 1년에 1차례 정도 밖에 상선이 왕래할 수 없었다.¹⁰⁰⁾ 이런 상황에서 제주에는 관선이 단 1척도 없어서, 진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선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¹⁰¹⁾ 그런데 제주 상인이 육지에 나가서 교역하는 적기는 음력 3, 4월이었다. 이때 진상선으로 징발당하면 4, 5개월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교역 자체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배를 소유한 이들은 진상선이나 공무역에 동원될 경우, 상인들의 짐도 함께 운반하여 선가를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¹⁰²⁾

한편 18세기까지는 제주의 상인들이 육지 상인과의 거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시 제주와 육지 사이의 거래 물종을 보면, 제주에서는 말과 전복, 양태, 감곽, 나무빗 등 대부분이 제주의 특산물이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서 진상하는 전복은 전량 제주에서 공급되고 있었다.¹⁰³⁾ 따라서 그 수요나 가격 책정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한된 거래 기간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상쇄되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제주 상인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제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현지의 곡가가 비싸더라도 그곳에 체류하면서 가격이 낮아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흉년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말을 신고 육지로 나가면 말 한 마리에 쌀 한 섬의 가격을 매겨도 이를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¹⁰⁴⁾

반면 육지에서 들어간 상인들은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했다고 판단된다. 이 역시 제주의 주요 구입 품목이 곡식이었다는 데 있었다. 제주의 경우

99) 『南槎錄』 10월 12일.

100) 『羅里浦事實』 改節目, 乾隆己丑(영조 45, 1769).

101) 『備邊司謄錄』 93책, 영조 9년 정월 14일.

102) 『書啓輯錄』, 『濟州巡撫御史朴天衡書啓』(1781년, 정조 5년). “當三四月行商興利之時 官家捉繫各船 動費四五朔 爲害甚大”.

103) 『正祖實錄』 권51, 정조 23년 4월 정미.

104) 『備邊司謄錄』 182책, 정조 18년 11월 24일.

흉년이 들면 전적으로 육지의 곡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거래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34)의 영암상인 박성휘 등은 1749년 미 60석과 피모 100석을 가지고 가서 소금 350석을 무역하고 돌아오다가 표류하였다.¹⁰⁵⁾ 원래 제주에서는 소금이 생산되지 않았다가,¹⁰⁶⁾ 17세기에 별방에서 정외 사이에 염전이 개발되어 소금이 생산되었다.¹⁰⁷⁾ 그만큼 제주에서 소금은 매우 귀한 상품이었다. 통상 육지에서는 소금 1석이 미 2석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¹⁰⁸⁾ 제주에서는 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성휘 등은 160석 정도의 곡식으로 소금 350석을 무역하고 있다. 육지에서의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4배 이상의 헐값으로 소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당시 제주의 흉년이 심했고, 따라서 곡식 가격이 평상시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암 상인인 박성휘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지척에 소금 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까지 가서 다른 상품을 체쳐두고 소금을 사가지고 육지로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주 상인에게 불리했던 교역 조건이 19세기 중엽이 되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전히 법제적으로는 제주에 출입하는 상인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다. 외지의 상인들은 공문 없이 제주에 들어와도 될 정도로 법이 허술해졌다.¹⁰⁹⁾ 그것은 제주 자체의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 이후 제주의 곡물 반입에 민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제주에서는 미곡 상인이 제주에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폈다. 예를 들어 경강선이 400석의 미곡을 반입할 경우, 도착해서

105) 『漂人領來曆錄』 20책, 庚午(1750, 영조 26) 10월 1일.

106) 『濟州風土錄』.

107) 『南棗錄』 9월 13일.

108) 『備邊司曆錄』 103책, 英祖 14년 正月 20일.

109) 『耽營關報錄』 道光 21년(헌종 7, 1841) 윤 3월 일.

출발할 때까지 세금만 거의 60냥에 가까웠다. 그러나 흉년에 무곡선이 입항하는 것은 비록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이지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세금을 절반으로 탕감해 주었다.¹¹⁰⁾

이와 함께 제주 사상들도 별 어려움 없이 육지에 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¹¹¹⁾ 이 역시 제주와 육지 사이의 원활한 물자유통이 필요했던 제주 자체의 사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 상인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물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 까지 대항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¹¹²⁾

이올러 이들은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법이 허술해지면서, 육지에서 다양한 상업 활동에 종사하였다. 특히 선상의 경우 더하였다. 그들은 진상선에 징발당하지 않는 한편, 운반가를 취할 목적으로 육지로 나갔다. 그래서 서울로 반입되는 물건을 운반해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호서나 영남지역에서 미곡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¹¹³⁾

부표 45)의 강성득처럼, 외국에 표류했다가 제주로 귀환하는 도중에 도망치는 경우까지 있었다.¹¹⁴⁾ 어차피 제주에 돌아가 봐야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 남아 각자 삶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 대마도 등에 표류할 경우 노자 등을 후하게 준다는 이유로 일부러 표류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부표 46)의 한관점 등은 1840년에 교역을 목적으로 영암 이진포에 갔으나 거래가격이 적당하지 않아 해를 넘기도록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110) 『耽羅錄』中, 壬寅(헌종 8, 1842) 11월 15일.

111) 『耽營關報錄』辛丑(헌종 7, 1841) 윤 3월 12일, 『左面風憲』.

112) 『耽營關報錄』辛丑(헌종 7, 1841) 6월 1일, 『下帖橋林三泉四學』.

113) 『耽營關報錄』辛丑(헌종 7, 1841) 윤 3월 17일, 『甘結大靜縣』, “其中體大完固之船 食於船價之高騰 出去內陸 或有裝載京卜而上江者 或爲米賈住于湖中嶺南等地 閱月不來而謀避貢獻者.”

114) 『耽羅啓錄』道光 22년(1842, 헌종 8) 10월 8일.

1841년 4월 동래 부산진으로 가서 8월 27일 소목燒木을 가득 신고 제주로 돌아오다가 표류하였다.¹¹⁵⁾

이 경우를 보면 제한된 기간에 돌아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곡식 등 목적한 상품의 가격이 너무 높아 큰 이윤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교역을 하지 않고 현지에서 기다리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들이 그곳에서 무위도식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선박을 이용하여 운수업이나 행상 등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동래에 갔다가 땀값이 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들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부표 47)의 고상업은 1837년 영남에 가서 양태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돈을 받지 못하다가, 1841년 여름에 황죽篋竹, 백목, 사기 등을 대금으로 받아 제주로 돌아오다가 표류하였다.¹¹⁶⁾ 이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외상거래이다. 적어도 외상거래가 가능하려면 여러 번에 걸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신용이 쌓였을 때라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고상업은 1837년 이전부터 영남 지역의 상인 혹은 소비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행했으며,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대금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용이 깊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들 상인들의 활동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전라도와 경상도 뿐 아니라, 49)의 김상로는 제주목 애월포에서 미역을 신고 출항하여 강화에서 곡식을 사들이고 있고,¹¹⁷⁾ 54)¹¹⁸⁾와 67)¹¹⁹⁾의 경우는 강경으로 교역하러 가고 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서울의 시전상인과 양태의 판매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도 하였다.¹²⁰⁾ 이에 제주목사

115) 『耽羅啓錄』 道光 22년(1842, 현종 8) 5월 10일.

116) 『耽羅啓錄』 道光 23년(1843, 현종 9) 4월 6일.

117) 『濟州啓錄』 道光 27년(1847, 현종 13) 6월 16일.

118) 『濟州啓錄』 道光 30년(1850, 철종 1) 3월 28일.

119) 『濟州啓錄』 咸豐 6년(1856, 철종 7) 2월 12일.

120) 『備邊司謄錄』 215책, 순조 30년 정월 11일.

가 나서서 제주상인이 서울에서 마음대로 양태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미포를 교역하여 제주도민의 곡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첩보하고 있다.¹²¹⁾ 나아가 1840년대 제주목사를 지냈던 이원조는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양태를 직조하지 못하게 하여 제주의 양태 독점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¹²²⁾

이처럼 19세기 중반이 되면 제주 상인들은 이전 시기에 비해 좀더 나은 조건으로 육지와와의 교역에 나서게 되었다.¹²³⁾ 그것은 제주 상인의 출륙^{出陸}에 대한 제한이 허술해지면서 거래기간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육지 상인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이른바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고, 또 이를 통해 육지에서의 운반업이나 무곡상으로서의 영업이 가능해졌던 사정도 작용했다고 보인다. 물론 그 이전에는 18세기 말 이후 제주와 육지의 원활한 곡물 유통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던 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4. 맺음말

제주 지역은 척박한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육지의 곡물과 원활한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생산에 큰 타격이 있었다. 때문에 일찍부터 정부와 민간 모두 육지와와의 교역에 적극적이었다.

정부주도하의 물자교역은 18세기 이후 제주 산물이 지닌 상품 가치에 주

121) 『濟州叢報』 己酉(1849, 헌종 15) 정월 4일.

122) 고창석, 앞의 논문, 2006.

123)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파악한 표류관계 기사가 19세기 전반기는 매우 소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 중엽 사이에 제주의 민간교역이 질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목한 정부가 제주 진흙곡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시행했던 나리포창의 운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나리포창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것은 정부가 착안했던 관영상업의 형태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이 결여된 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당시 제주와 육지의 민간교역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현지의 토착세력과 관리들이 결탁하여 나리포창의 운영을 하나의 이권으로 삼은 데도 하나의 원인이 있었다. 그들은 양 교역 부분의 가격 차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이윤을 획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부주도의 교역을 형해화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18세기말부터 제주의 물자교역에 민간차원의 물자유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한편 민간차원의 물자교역은 크게 제주도 내부의 교역과 제주와 육지간의 교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장시가 개설되지 않았다. 그것은 제주 물자교역의 중심이 육지와와의 교역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역 내부의 물자 교역은 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포구는 제주의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의 물자교환뿐 아니라 육지에서 반입되는 상품의 교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는 별도의 장시를 개설하는 것보다, 포구에서 교역하는 것이 제주 내부의 수요자, 판매자뿐 아니라 외지의 상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제주와 육지간의 물자유통은 18세기말 이후 제주의 물자유통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지면서, 육지와와의 교역조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18세기까지 제주 상인의 육지에서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제한된 거래기간, 곡물 구입의 시급함 등의 조건 때문에 제주상인은 육지상인에 비해 불리한 교역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이 되면 제주 상인들은 이전 시기에 비해 좀더 나은 조건으로 육지와와의 교역에 나서게 되었다. 그것은 제주 상인의 출륙에 대한 제한이 허술해지면서 거래기간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육지 상인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이른바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고, 또 이를 통해 육지에서의 운반업이나 무곡상으로서의 영업이 가능해졌던 사정도 작용했다고 보인다. 물론 그 이면에는 18세기말 이후 제주와 육지의 원활한 곡물 유통에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던 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 | | |
|----------------------------|--------------------------------|
| • 2008. 05. 13 : 논문투고 | • 2008. 05. 14~06. 02 : 심사 |
| • 2008. 06. 08 : 수정완료 후 제출 | • 2008. 06. 10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부표> 조선 후기 제주선박의 표류 기록

번호	年度	人 名	人員	身分(職業)	出港地	目的地	出 港 目 的
1	1652	석 천 등	11	寺奴 등	제 주	강진	진상
2	1663	김여휘 등	28	품관 등	해 남	제주	구걸
3	1664	김원상 등	47	추지도 진수 등	제 주	서울	진상, 분상 등
4	1679	전 우 등	41	상인 등	강 진	제주	과거 응시, 진상공물 상납 등
5	1688	김태황 등		색리 등	제 주		제주미진상
6	1698	강두추 등	54	서울 상인 등	제 주		진상잡물 및 군량 무역 등
7	1699	유순남 등	13	海夫	제 주	정의	미역 채취
8	1700	허태죽 등	44	상인 등	제 주	강진	진상 및 무곡 등
9	1702	오세상 등	42	유학 등	제 주	강진	진상 등
10	1704	안세량 등	39	유학 등	제 주	해남	진상 및 잡물무역 등
11	1705	고만곤 등	38	총의위 등	제 주		진상 및 잡물무역 등
12	1706	김이운 등	7	상인 등	제 주	강진 청산도	무곡
13	1708	고세환 등	21		제 주	강진=만경	진상 및 무곡
14	1708	김이운 등	28	상인 등	제 주	해남⇒부안⇒제주	진상 및 무곡 등
15	1715	이 북 등	22	색리 등	제 주	강진	제주 이전곡 운반 등
16	1717	김일이 등	10	시노 등	제 주	강진	경상도 이전곡 재운
17	1718	이공련금 등	31	상인 등	제 주	나주=제주	무곡 등
18	1721	현치성 등	43	품관 등	제 주	홍덕, 나주	진상 및 나리포 잡물재운 등
19	1723	고세중 등	21	색리 등	영광법성포	제주	진상 및 이전곡 재운 등
20	1723	현여홍 등	25	장교 등	제 주	강진	이전곡 운반 사고 조사
21	1723	강차만 등	25	상인 등	제 주	강진	진상 및 무곡 등
22	1724	김택령 등	58	상인 등	제 주	해남	진상 및 무역 등
23	1725	김만남 등	11	상인 등	제 주	해남	무곡
24	1728	고차용 등	9	상인 등	제 주	해남	무곡
25	1730	강이만 등	20	상인 등	제 주	강진	무역 및 이전곡대 재운
26	1730	김백삼 등	30	아전 등	제 주	나리포	이전곡대 재운
27	1733	문천금 등	25	상인 등	강 진	제주	무곡 등
28	1733	문효량 등	16	양인 등	제 주	강진	이전곡 재운후 귀향 등
29	1738	박시완 등	13	제주목 하인	제 주	나리포	무곡
30	1741	강세찬 등	20	제주목하인 등	제 주		무역
31	1741	김철중 등	18	제주목 하인 등	제 주		진상 등
32	1742	황중희 등	3	상인 등	정 의	제주	소금 무역
33	1745	양갈만 등	10	색리 등	제 주		진상
34	1750	윤덕찬 등	11	상인 등	제 주	영암	무곡 등
35	1756	김응택 등	41	상인 등	제 주		양태 무역 및 진상 등
36	1762	김중경 등	7		나리포	제주	무곡 및 이전곡 재운 등
37	1765	김순창 등	8	선인	제 주	제주	무역
38	1770	부차길 등	8	선인	나리포	제주	이전곡 재운
39	1778	고만제 등	13		은 진	제주	진상 및 무역 등
40	1778	고수만 등	41	상인 등	강 진	제주	진상 등

번호	年度	人 名	人員	身分(職業)	出港地	目的地	出 港 目 的
41	1779	윤도준 등	9	상인 등	제 주		미역 무역
42	1786	이응춘 등	11	상인 등	영광 논조포	제주	무곡 등
43	1841	박치옥 등	2	상인 등	제 주		양태 무역
44	1841	김홍록 등	26	상인 등	제 주		무역 등
45	1842	강성득 등	9	상인 등	제 주	제주	무역
46	1842	한관겸 등	10	상인 등	동 래	제주	빨감 무역
47	1842	고상엽 등	3	상인 등	하 동	제주	양태 무역 등
48	1847	김태진 등	26	상인 등	제 주		진상
49	1847	김상로 등	14	공생 등	강 화	제주	무곡
50	1848	문경록 등	32	상인 등	제 주		무역
51	1849	고경호 등	5	기패 등	제 주	제주	곡식 재운
52	1849	강진옥 등	5	상인 등	제 주		진상 및 사상 귀향 등
53	1849	안성훈 등	15	기술 등	제 주	제주	조선 후 귀향 중
54	1850	김성집 등	21	사상	강 경	제주	무곡
55	1850	문대련 등	5	상인 등	제 주	제주	무역
56	1850	부평련 등	10	기술 등	제 주	제주	무역
57	1850	송세길 등	6	기술 등	제 주	제주	무역
58	1850	안성훈 등	15	기술 등	제 주	제주	조선 후 귀향
59	1850	한명완 등	2	기패 등	제 주	제주	시藻
60	1851	문내경 등	5	기술 등	제 주	제주	무역
61	1852	양영춘 등	5	기패 등	제 주	제주	무역
62	1852	양구환 등	4	기술 등	제 주	제주	사기 무역
63	1855	이덕량 등	29	상인 등		제주	무역
64	1855	조정표 등	5			제주	제주 입거차
65	1855	김익량 등	9	공생 등	제 주	제주	미역 교역
66	1855	한치득 등	3	기술 등	제 주	제주	해조 교역
67	1856	양서홍 등	5	양인 등	제 주	강경	무역
68	1856	이자정 등	6	한량 등		제주	무역
69	1856	김응량 등	6	공생 등	제 주	제주	무역
70	1856	이득광 등	10	서원 등	제 주	강경	무곡
71	1856	김응로	1		제 주		무역
72	1856	고봉익 등	7		제 주	제주	
73	1856	한치득 등	5	서원 등	제 주	제주	시藻
74	1857	윤광득 등	3	서원 등	제 주	제주	빨감 무역
75	1857	김기량 등	3	상인 등	제 주	제주	옹기 무역
76	1858	백다기 등	3	상인 등	제 주	제주	옹기 무역
77	1858	윤평순 등	6	공생 등	제 주	제주	초석 무역
78	1858	백인효 등	5	기패 등	제 주	제주	모초 무역
79	1858	김성진 등	5		제 주	제주	약재 무역

* 전거 자료 : 『備邊司臚錄』, 『漂人領來臚錄』, 『同文集考』, 『耽羅錄』, 『濟州啓錄』, 『耽營關報錄』.

참고문헌

- 『羅里浦事實』
『南征記』
『南槎錄』
『南槎錄』
『同文集考』
『備邊司謄錄』
『書啓輯錄』
『承政院日記』
『輿地圖書』
『日省錄』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牧關報牒』
『濟州風土錄』
『朝鮮王朝實錄』
『千一錄』
『耽羅錄』
『耽羅誌』 草本
『耽營關報錄』
『漂人領來謄錄』

- 高東煥,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지식산업사, 1998).
高昌錫, 『19세기 濟州人의 漂流實態』, 『19세기 濟州社會研究』(일지사, 1997).
_____, 『제주목사 겸 방어사 이원조의 행적』,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역락, 2006).
宋贊植, 『朝鮮後期 行錢論』, 『韓國思想大系』 2(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6).

- 影山剛, 『中國古代の商工業と專賣制』(東京大出版部, 1984).
- 李哲成, 「18세기 田稅 比摠制의 實施와 그 性格」, 『韓國史研究』 81(1993).
- _____, 『朝鮮後期 對淸貿易史 研究』(國學資料院, 2000).
- 李 薰,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國學資料院, 2000).
- 長森美信, 「李朝後期の海上交易 - 全羅道地域を中心に」, 『千里山文學論集』 59 (1998).
- 鄭萬祚, 「肅宗朝 良役變通論의 展開와 良役對策」, 『國史館論叢』 17(1990).
- 鄭亨芝, 「조선후기 交濟倉의 설치와 운영」, 『梨大史苑』 28(1995).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 of Commodity Money Economy in the Jeju Area in the 18th and Mid 19th Century

Lee, Uk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Commodity money economy in Jeju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as active in both governmental and private sectors. The trade of commodities l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e 18th century is represented by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Naripochang. However, Naripochang was not much effective due to the limitation of government operated commerce. As the government's policy was changed from the late 18th century, commodity trade in private sectors occupied the central position of trade between the Jeju Island and the main land.

This change also brought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trade between merchants in Jeju and in the main land. Until the 18th century, Jeju merchants' activities in the main land were strictly regulated. It was because Jeju merchants were under disadvantageous conditions compared main land merchants as they were pressed by limited period of trade, urgent need to buy grains, etc. Turning the mid 19th century, however, they participated in trade with the land under better conditions.

It was because the period of trade became relatively longer as regulations on Jeju merchants' access to the main land were loosened. Furthermore, their frequent contacts with main land merchants enabled so called dealings on credit, an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for them to operate transportation business or grain dealing.

Key words: Commodity distribution, Naripo, government operated commerce, trade conditions, trade items, floating

